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오염행위

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1. 4. 21.
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1년 4월 8일

나. 발의자: 김화영 의원 외 3명

다. 회부일자: 2021년 4월 12일

라. 상정일자: 제23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(2021. 4. 19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김화영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운영 중인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포상대상의 제외사항을 추가 신설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대상의 제외사항 추가 신설(안 제2조제2항)

- 신문, 방송, 기타 정기간행물에서 보도한 사건 · 사고나 공개된 환경오염 신고 사항
- 법원에 재송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

- 그 밖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이원배)

- 본 안건은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운영하는 환경오염행위 신고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포상대상의 제외사항을 추가 신설하고자 발의된 개정 조례안임.

- 주요내용은

- 안 제2조제2항에 신문, 방송, 기타 정기간행물에서 보도한 사건·사고나 공개된 환경오염신고 사항과 법원에 쟁송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는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대상에서 제외토록 추가 신설하였고,
 - 그 밖에 「물환경보전법」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음.
- 본 조례안은 주민의 제보를 통해 환경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고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운영하는 환경오염행위 신고 제도 관련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, 「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「물환경보전법」 등 환경 관련 법령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구청장이 적정한 포상을 할 수 있음.

- 다만, 합리적인 제도 운영과 신고의 오·남용 방지를 위해 정당하지 않은 신고 등은 포상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 언론매체 등을 통해 기보도된 사건·사고, 법원에 쟁송 중인 사건 등 공개된 환경오염사항을 신고한 경우 포상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, 내용이 관련 법령에 저촉됨 없이 적정하게 규정되었음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(김화영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335
--------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: 2021년 4월 8일
발의자: 김화영 의원 외 3명

1. 제안이유

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환경오염행위 신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포상대상의 제외사항을 추가 신설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대상의 제외사항 추가 신설(안 제2조제2항)

- 신문, 방송, 기타 정기간행물에서 보도한 사건·사고나 공개된 환경오염신고 사항
- 법원에 쟁송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

나. 그 밖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

3. 개정안 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물환경보전법」, 「화학물질관리법」, 「토양환경보전법」,
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.
- 다. 입법예고 : 2021. 4. 8. ~ 4. 13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물환경보전법」”으로, “「유해화학물질 관리법」”, “「토양환경 보전법」”을 “「화학물질관리법」”, “「토양환경보전법」”으로 한다.

제2조제2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신문, 방송, 기타 정기간행물에서 보도한 사건 · 사고나 공개된 환경오염신고 사항

9. 법원에 쟁송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

제4조 중 “「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<p><u><신 설></u></p> <p>③ · ④ (생 약)</p> <p>제4조(접수 및 처리)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신고를 「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하여 접수 · 처리하여야 한다.</p>	<p><u>에서 보도한 사건 · 사고나 공개된 환경오염신고 사항</u></p> <p><u>9. 법원에 쟁송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</u></p> <p>③ ·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접수 및 처리) ----- -----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----- -----.</p>
---	---